

Pride & Hope 진리로 행복한 세상을 밝힌다

# 2019학년도 대학 입학전형 기본계획

2017. 4.



본 기본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변경 사항은 추후 우리 대학교 입학안내 홈페이지(<http://admission.jnu.ac.kr>)를 통해 공고할 예정입니다.

## 2019학년도 전형별 모집인원 및 반영방법

모집 구분	구분	전형명		모집인원(명)			전형방법	수능 최저 기준	
				정원 내	정원 외	합계			
수시	학생부 교과	학생부교과일반전형		1,900		1,900	[일괄선발] 학생부 80% + 교과서류평가 20%	적용	
		고른 기회 교과 전형	국가보훈대상자		28		28	1단계: 학생부 100%, 5배수 선발 2단계: 1단계 80% + 면접 20%	미적용
			특수교육대상자			34	34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한부모가족			18	18		
	학생부 종합	지역인재전형		462		462	1단계: 종합서류평가 100%, 4배수 선발 2단계: 1단계 70% + 면접 30%	미적용*	
		학생부종합일반전형		455		455		미적용	
		고른 기회 종합 전형	다문화가정등		10			10	미적용
			대안학교장추천자		10			10	미적용
			후계농업경영인		4			4	미적용
			농·어촌학생			155		155	미적용
			특성화고교졸업자			39		39	미적용
	소 계			2,869	246	3,115			
	정시	수능 위주	일반전형		836		836	수능 100%	
일반전형			107		107	수능 + 실기고사 [음교, 체교, 미술(이론 제외), 디자인]			
실기 위주		일반전형		84		84	수능 + 실기고사 (음악학과, 국악학과)		
		소 계			1,027		1,027		
학부 계				3,896	246	4,142			
치의학 전문대학원 (학석사 통합과정)	수시	학생부 교과	일반전형	18		18	[일괄선발] 학생부 80% + 교과서류평가 20%	적용	
		학생부 종합	지역인재전형	10		10	1단계: 종합서류평가 100%, 5배수 선발 2단계: 1단계 70% + 면접 30%	적용	
	정시	수능 위주	일반전형	7		7	수능 100%		
	소 계			35		35			
총 계				3,931	246	4,177			

\* 지역인재전형 수능최저기준: 의예과, 치의학전문대학원 적용

※ 2019학년도 입학정원 교육부 승인 내역에 따라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이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수시모집 전형 간 복수지원 방법: 학생부교과전형, 지역인재전형, 학생부종합전형 중 2개 전형에 중복지원 가능

※ 수시모집 정원 내 전형 및 농·어촌학생전형 미충원 인원은 정시모집 해당 군으로 이월하여 선발함

# 수시모집

## I 지원자격

### 1 학생부교과전형

#### 1-1. 학생부교과일반전형

-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한국사 포함)에 응시한 자로서, 국내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가 있는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2019년 2월 졸업예정자  
(국내 고등학교 석차등급, 출결성적 등 산출이 불가능한 자는 지원할 수 없음)

#### 1-2. 국가보훈대상자전형

- 가. 지원자격: 국내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가 있는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2019년 2월 졸업예정자  
(국내 고등학교 석차등급, 출결성적 등 산출이 불가능한 자는 지원할 수 없음)
- 나. 세부 지원자격

연번	지원자격	법률 근거	증명서 발급기관
1	독립유공자의 자녀 및 손자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 및 제2호	보훈(지)청
2	국가유공자 및 그 자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 제18호 (단, 10호에 해당하는 참전유공자 제외)	
3	6·18자유상이자 및 그 자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	
4	지원 순직·공상 군경(공무원) 및 그 자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9조	
5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지급 대상자) 및 그 자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및 제7조 제9항	
6	5·18민주유공자 및 그 자녀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 ~ 제3호	
7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자녀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 ~ 제3호	
8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자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 제4호	
9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그의 자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행정자치부

#### 1-3. 특수교육대상자전형

- 가. 지원자격: 국내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가 있는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2019년 2월 졸업예정자  
(국내 고등학교 석차등급, 출결성적 등 산출이 불가능한 자는 지원할 수 없음),  
검정고시 출신자(전형 세부 지원자격을 갖춘 자)
- 나. 세부 지원자격: 1), 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장애인(1급 ~ 6급)으로 시·군·구청에 등록되어 있는 자
  -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등에 의한 상이 등급자로 국가보훈처에 등록되어 있는 자 중에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1급 ~ 6급 기준에 상응하는 자

**1-4.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한부모가족전형**

가. 지원자격: 국내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가 있는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2019년 2월 졸업예정자 (국내 고등학교 석차등급, 출결성적 등 산출이 불가능한 자는 지원할 수 없음), 검정고시 출신자(전형 세부 지원자격을 갖춘 자)

나. 세부 지원자격: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1호(수급권자), 2호(수급자), 제10호(차상위계층)에 의한 대상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의한 대상자

**2 학생부종합전형**

**2-1. 학생부종합일반전형**

- 국내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가 있는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2019년 2월 졸업예정자 (국내 고등학교 석차등급, 출결성적 등 산출이 불가능한 자는 지원할 수 없음)

**2-2. 지역인재전형**

- 호남지역 소재 (광주·전남·전북)고등학교 전 과정을 이수(입학~졸업)한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2019년 2월 졸업예정자

(국내 고등학교 석차등급, 출결성적 등 산출이 불가능한 자는 지원할 수 없음)

※ 의예과와 치의학전문대학원(학·석사통합과정)은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므로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한국사 포함)에 응시해야 함

**2-3. 다문화가정등전형**

가. 지원자격: 국내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가 있는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2019년 2월 졸업예정자 (국내 고등학교 석차등급, 출결성적 등 산출이 불가능한 자는 지원할 수 없음)

나. 세부 지원자격

구분	지 원 자 격
다문화가정	① 친부모 중 일방이 결혼이민자이며 그 상대방이 대한민국 국적자인 가정의 자녀 [단, 외국 국적을 가진 친부(모)가 결혼 이전에 한국 국적을 포기한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자격을 인정하지 않으며 지원자는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이어야 함] ② 친부모 중 일방 이상이 귀화에 의한 대한민국 국적 취득자인 가정의 자녀 ③ 위 ①, ②호에 해당되었다가 부모가 이혼하거나 재혼한 경우에는 외국국적자였던 친부 또는 친모가 친권을 유지한 경우에만 지원자격을 인정함. 친부모의 친권과 양육권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양육권자를 기준으로 함
다자녀가구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 지원자 본인을 포함한 형제자매가 3자녀 이상인 가구의 자녀
아동복지시설 생활자	아동복지법에 의거 인가된 아동복지시설 생활자
소아암병력자	소아암 병력자로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의 추천을 받은 자

#### 2-4. 대안학교장추천자전형

- 가. 지원자격: 국내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가 있는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2019년 2월 졸업예정자  
(국내 고등학교 석차등급, 출결성적 등 산출이 불가능한 자는 지원할 수 없음)
- 나. 세부 지원자격: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 3(시행령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교육감의 지정을 받은 대안교육 특성화고등학교( 대안학교) 졸업(예정)자로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 2-5. 후계농업경영인전형

- 가. 지원자격: 국내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가 있는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2019년 2월 졸업예정자  
(국내 고등학교 석차등급, 출결성적 등 산출이 불가능한 자는 지원할 수 없음)
- 나. 세부 지원자격: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자 또는 그의 자녀

#### 2-6. 농·어촌학생전형

- 가. 지원자격: 국내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가 있는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2019년 2월 졸업예정자  
(국내 고등학교 석차등급, 출결성적 등 산출이 불가능한 자는 지원할 수 없음)
- 나. 세부 지원자격: 1), 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1) **초·중·고교 전 과정 농·어촌 또는 도서·벽지 이수자:**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 소재 또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 초·중·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본인이 초등학교 입학 시부터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농·어촌 또는 도서·벽지에 거주한 자
  - 2) **중·고교 전 과정 농·어촌 또는 도서·벽지 이수자:**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 소재 또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 중·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본인 및 그의 부모 모두가 지원자의 중학교 입학시부터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농·어촌 또는 도서·벽지에 거주한 자
- ※ 농·어촌 및 도서·벽지 지역에 소재한 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예술 및 체육 계열의 특수목적고는 제외됨

#### 2-7. 특성화고교졸업자전형

- 가. 지원자격: 국내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가 있는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2019년 2월 졸업예정자  
(국내 고등학교 석차등급, 출결성적 등 산출이 불가능한 자는 지원할 수 없음)
- 나. 세부 지원자격: 1), 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1) 초·중등교육법 제91조 제1항의 특성화고교 중 소질과 적성 및 능력이 유사한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를 졸업(예정)하고 지원하려는 우리대학의 모집단위에서 요구하는 "기준학과"를 충족한 자  
(단, 전입학 학생은 "기준학과"의 교과를 30단위 이상 이수해야 함)
  - 2) 일반계고교 중 구(舊) 종합고의 전문계학과 졸업(예정)자로서 지원하려는 우리대학의 모집단위에서 요구하는 "기준학과"를 충족한 자(단, 전입학 학생은 "기준학과"의 교과를 30단위 이상 이수해야 함)
-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 제1항 제10호의 특수목적고등학교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마이스터고) 출신자는 지원할 수 없음
- ※ 단, 모집요강에 기준학과명이 명시되어 있지 않을지라도 특성화고교에서 해당 모집단위와 관련된 전문 교과를 30단위 이상 이수한 경우 지원 가능함

II

수능최저학력기준

□ 적용 대상 전형: 학생부교과일반전형, 지역인재전형

모집단위	수학 가형, 과탐 2과목 필수 응시	반영 영역	수능최저학력기준	
		국어, 수학, 영어, 탐구(1과목) 4개 영역 중	학생부교과 일반전형	지역인재 전형
의과대학 의예과	○	4개 영역의 합	5등급 이내	6등급 이내
치의학전문대학원(학·석사통합과정)	○	4개 영역의 합	6등급 이내	7등급 이내
사범대학(수학교육과), 수의과대학 수의예과	○	3개 영역의 합	6등급 이내	미적용
사범대학(국어교육과, 영어교육과)	-			
사범대학(화학교육과, 생물교육과)	○	3개 영역의 합	8등급 이내	미적용
경영대학, 사범대학(지리교육과, 역사교육과)	-			
공과대학(기계공학부, 전기공학과), 사범대학(물리교육과, 지구과학교육과)	○	3개 영역의 합	9등급 이내	미적용
자율전공학부, 간호대학, 사범대학(교육학과, 유아교육과, 윤리교육과, 가정교육과), 사회과학대학, 인문대학, 자연과학대학(생명과학기술학부)	-			
공과대학(기계공학부, 전기공학과 외 모든 모집단위), 자연과학대학(수학과, 통계학과, 물리학과)	○	3개 영역의 합	10등급 이내	미적용
사범대학(음악교육과, 특수교육학부), 예술대학(미술학과 이론전공), 자연과학대학(지구환경과학부, 생물학과, 화학과)	-			
농업생명과학대학, 생활과학대학	-	3개 영역의 합	11등급 이내	미적용
공학대학, 문화사회과학대학, 수산해양대학	-	3개 영역의 합	15등급 이내	미적용

※ 공과대학: 과탐 2과목 대신 직탐 2과목 반영 가능

※ 전공예약 모집단위는 해당 학부(과) 기준과 동일

### Ⅲ 전형유형별 세부사항

#### 1 학생부교과전형

##### 1.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전형명	선발 단계	선발 배수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				수능 최저 기준
			학생부	면접	교과 서류평가	합계 [전형총점]	
□ 학생부교과일반전형	일괄	1배수	80 [800점]	-	20 [200점]	100 [1,000점]	적용
□ 고른기회교과전형 - 국가보훈대상자 - 특수교육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한부모가족	1단계	5배수	100 [800점]	-	-	100 [800점]	미적용
	2단계	1배수	80 [800점]	20 [200점]	-	100 [1,000점]	

##### 2. 학교생활기록부 반영 비율

전형명	교과성적 학년별 반영비율(100%)			학생부 요소별 반영비율 (100%)		반영 점수		
	1학년	2학년	3학년	교과 성적	출결 상황	기본 점수	실질 반영 점수	반영 총점
□ 학생부교과일반전형 □ 고른기회교과전형 - 국가보훈대상자 - 특수교육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한부모가족		100		90	10	536	264	800

※ 교과성적은 3학년 1학기까지 반영

※ 출결상황은 졸업예정자는 3학년 1학기까지, 졸업자는 3학년 2학기까지 반영

##### 3. 학교생활기록부 교과성적 반영 교과군

이 수 학 년	모집단위 계열	교 과 군					
		국어	영어	수학	사회 도덕	과학	제2외국어 한문
1,2,3 학년	인 문	○	○	○	○		○※
	자 연	○	○	○		○	
	인문 · 자연	○	○	○			
	예능	○	○		○		

※ 제2외국어, 한문 교과군은 인문대학 모집단위만 적용함

4. 성적산출: 전남대학교 학부입시 홈페이지(<http://admission.jnu.ac.kr/>) 성적산출 프로그램 활용

※ **검정고시 출신자의 성적산출** (특수교육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한부모가족 전형에 한함)

- 검정고시 취득성적 구간별 등급 및 등급점수 부여(2~9등급)

검정고시 취득성적	100점-95점	94점-85점	84점-75점	74점-70점	69점-65점	64점이하
등급	2	3	4	5	6	9
등급점수	92	82	75	70	65	60

- 성적환산: 국어, 영어, 수학은 3단위, 나머지 과목은 1단위로 산출

- 성적산출:  $[\sum(\text{이수단위} \times \text{등급점수}) / \text{이수단위의 합}] \times 2.64 + 536$

5. 평가방법

전형명	평가 방법	반영 점수 (기본점/만점)
□ 학생부교과일반전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과서류평가</li> <li>평가요소: 학업수행역량</li> <li>전형자료: 학교생활기록부</li> </ul>	100점 / 200점
□ 고른기회교과전형 - 국가보훈대상자 - 특수교육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한부모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면접</li> <li>평가요소: 인성역량, 학업수행역량</li> <li>전형자료: 학교생활기록부</li> <li>※ 검정고시 출신자는 별도 기준에 따라 실시함</li> </ul>	100점 / 200점

※ 세부 평가 기준 및 방법은 우리 대학교 세부지침에 의거 실시함



## 1.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전형명	선발 단계	선발 배수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			수능 최저 기준
			종합 서류평가	면접	합계 [전형총점]	
□ 학생부종합일반전형 □ 지역인재전형* □ 고른기회종합전형 - 다문화가정등 - 대안학교장추천자 - 후계농업경영인 - 농·어촌학생 - 특성화고교졸업자	1단계	4배수	100 [700점]	-	100 [700점]	미적용*
	2단계	1배수	70 [700점]	30 [300점]	100 [1,000점]	

\* 지역인재전형 의예과, 치의학전문대학원은 수능최저기준 적용

## 2. 평가 방법

전형명	평가 방법	반영 점수 (기본점/만점)
□ 학생부종합일반전형 □ 지역인재전형 □ 고른기회종합전형 - 다문화가정등 - 대안학교장추천자 - 후계농업경영인 - 농·어촌학생 - 특성화고교졸업자	• 종합서류평가 - 평가요소: 인성역량, 학업수행역량 - 전형자료: 학교생활기록부	350점 / 700점
	• 면접 - 평가요소: 인성역량, 학업수행역량 - 전형자료: 학교생활기록부	150점 / 300점

※ 세부 평가 기준 및 방법은 우리 대학교 세부지침에 의거 실시함

# 정시모집

## I 지원자격

우리 대학 모집단위에서 정한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한국사 포함) 반영 영역에 응시한 자로서,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2019년 2월 졸업예정자,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 II 전형 안내

### 1. 모집단위별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모집 시기	전형명	전형 유형	모집단위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전형 총점			
				수능	실기고사				
가/나 군	일반전형	수능 위주	아래 예·체능을 제외한 전 모집단위 (치의학전문대학원 학·석사통합과정 포함)		100				
나 군	일반전형 (예·체능) ※ 실기고사 실시	수능 위주	사범 대학	음악교육과	60	40	1,000점		
				체육교육과	75	25			
			예술 대학	미술학과	한국화전공, 서양화전공, 조소전공, 공예전공			60	40
				디자인학과	60	40			
		실기 위주	예술 대학	음악학과	30	70			
국악학과	30			70					

### 2. 모집단위별 대학수학능력시험 반영 영역

계열	국 어	수 학		탐 구	영 어	가산점
		가	나			
인문	○	○	○	사/과/직	○	
자연①	○	○		과/(직)※	○	
자연②	○	○	○	사/과/직	○	수학 가 20%
예능	○			사/과/직	○	
체능	○	○	○	사/과/직	○	

※ 공과대학은 탐구영역에 과탐 또는 직탐 반영 가능

자연① : 공과대학※, 사범대학(수학교육과, 물리교육과, 화학교육과, 생물교육과, 지구과학교육과),  
수의과대학, 의과대학, 자연과학대학(수학과, 물리학과, 통계학과),  
치의학전문대학원(학·석사통합과정) 모집단위

자연② : 간호대학, 공학대학, 농업생명과학대학, 문화사회과학대학(문화콘텐츠학부),  
사범대학(가정교육과), 생활과학대학, 수산해양대학,  
자연과학대학(지구환경과학부, 생물학과, 화학과, 생명과학기술학부) 모집단위

### 3. 수능 영역별 반영비율 및 전형요소별 반영 점수

계열	수능성적							실기 고사	전형 총점	
	변환표준점수					등급점수	계			
	국어	수학	탐구		소계					영어
			1과목	2과목						
인문 인문·자연	320점 (40%)	240점 (30%)	120점 (15%)	120점 (15%)	<b>800점 (100%)</b>	<b>200점</b>	1,000점	-	1,000점	
자연	240점 (30%)	320점 (40%)	120점 (15%)	120점 (15%)	<b>800점 (100%)</b>	<b>200점</b>	1,000점	-	1,000점	
예 체 능	• 미술학과 (이론전공)	400점 (50%)	-	200점 (25%)	200점 (25%)	<b>800점 (100%)</b>	<b>200점</b>	1,000점	-	1,000점
	• 음악교육과 • 미술학과(이 론전공제외) • 디자인학과	200점 (50%)	-	100점 (25%)	100점 (25%)	<b>400점 (100%)</b>	<b>200점</b>	600점	400점	1,000점
	• 음악학과 • 국악학과	100점 (50%)	-	50점 (25%)	50점 (25%)	<b>200점 (100%)</b>	<b>100점</b>	300점	700점	1,000점
	• 체육교육과	192.5점 (35%)	192.5점 (35%)	82.5점 (15%)	82.5점 (15%)	<b>550점 (100%)</b>	<b>200점</b>	750점	250점	1,000점

※ 실기고사: 실기고사 기준 및 방법은 우리 대학교 세부지침에 의거 실시함

※ 수능 한국사는 전형총점에 가산점 적용

※ 인문계열 내 인문대학은 제2외국어/한문을 사회탐구영역의 1과목으로 인정. 단, 사회탐구영역 2과목에 응시해야 함

○ 국어, 수학, 탐구영역 반영 방법: 지원자의 영역별 변환 표준점수를 반영 비율에 따라 적용  
(탐구영역은 반드시 2과목을 응시해야 함)

○ 영어영역 반영 방법: 지원자의 등급을 등급점수로 변환하여 반영

등급	1	2	3	4	5	6	7	8	9
등급점수	200	190	180	170	160	150	140	130	0

※ 실기위주 전형(음악학과, 국악학과)의 영어영역은 등급별 점수의 50%(100점 만점) 반영

○ 수능한국사 반영 방법: 전형총점에 가산점 적용

등급	1	2	3	4	5	6	7	8	9
점수	10					9	8	7	0

### Ⅲ 모집시기별 모집단위

단과대학	정시 가군 모집단위	정시 나군 모집단위	비고
본부직할	자율전공학부(4년, 1년)	-	<b>【실기고사 실시 학과】</b>  사범대학: 음악교육과 체육교육과  예술대학: 미술학과(이론제외) 디자인학과 음악학과 국악학과
간호대학	-	간호학과	
경영대학	경영학부	경제학부	
공과대학	건축학부, 에너지자원공학과, 기계공학부, 신소재공학부, 고분자융합소재공학부, 전기공학과, 생물공학과	토목공학과, 환경에너지공학과, 전자컴퓨터공학부, 화학공학부, 산업공학과	
공학대학 ◆	전기·전자통신·컴퓨터공학부, 냉동공조공학과, 해양토목공학과, 환경시스템공학과, 의공학과	기계설계공학과, 생명산업공학과, 화공생명공학과, 건축디자인학과	
농업생명 과학대학	산림자원학부, 농식품생명화학부, 바이오에너지공학과, 농업경제학과	식물생명공학과, 조경학과, 동물자원학부, 지역·바이오시스템공학과	
문화사회 과학대학 ◆	국제학부(일본학전공), 물류통상학부	국제학부(영어학전공), 국제학부(중국학전공), 문화콘텐츠학부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교육학과, 지리교육과, 역사교육과, 수학교육과, 물리교육과, 지구과학교육과, 가정교육과 특수교육학부(◆)	영어교육과, 유아교육과, 윤리교육과, 화학교육과, 생물교육과, 음악교육과, 체육교육과	
사회과학 대학	사회학과, 신문방송학과, 문화인류고고학과, 행정학과	정치외교학과, 심리학과, 문헌정보학과, 지리학과	
생활과학 대학	생활복지학과, 의류학과	식품영양과학부	
수산해양 대학 ◆	해양기술학부, 해양바이오식품학과, 수산생명의학과, 해양경찰학과		
수의과 대학	-	수의예과	
예술대학	-	음악학과, 국악학과, 미술학과, 디자인학과	
의과대학	의예과	-	
인문대학	영어영문학과, 독일언어문학과, 중어중문학과, 철학과	국어국문학과, 불어불문학과, 일어일문학과, 사학과	
자연과학 대학	통계학과, 화학과, 생명과학기술학부	수학과, 물리학과, 생물학과, 지구환경과학부	
치의학 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학·석사통합과정)	-	

◆ 공학대학, 문화사회과학대학, 수산해양대학, 사범대학 특수교육학부는 여수캠퍼스에 소재함

# 2019학년도 수시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기본계획

## 1. 전형 일반사항

### 가.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실시 목적

- 1) 해외근무자 자녀에 대한 국내 학교결손 보전을 통한 해외근무 여건 조성
- 2) 영주 교포자녀의 모국 수학 기회 제공
- 3) 외국인의 국내 대학 유학을 통한 국제교류 확대

### 나.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근거 법령

#### 1) 전형원칙(고등교육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대학교육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학자 선발에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차등적 보상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음

#### 2) 모집인원 산정(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2호, 6호, 7호)

- 가) 모집인원은 총 입학정원의 2% 이내,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 이내 선발
- 나) 북한이탈주민,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외국인·귀화허가를 받은 결혼이주민은 정원 제한없이 선발 가능

## 2. 전형 기본사항

### 가. 지원자격: 공통 학력 요건 및 구분별 자격요건을 충족한 자

- 1) 제1유형: 입학정원 2% 이내 정원 외 모집

#### 공통 학력 요건

국내·외 초·중등 12년 이상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학력을 소지한 자 중 아래 항에 해당하는 자

1. 외국소재 고교 졸업(예정)자
2. 외국소재 고교에서 국내 고교로 전학한 국내고교 졸업(예정)자

지원 자격 구분		자격 요건	공통 학력 요건
재 외 국 민	외국 영주 재외국민 (교포)의 자녀	부모 및 학생 모두가 영주권을 취득 후, 국외 해당국 에서 2년 이상 영주하는 재외국민(교포)의 자녀	<p>○ <b>외국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b></p> <p>1)고등학교 과정을 2년 이상 재학해야 함 2)고등학교 과정(1년 이상)을 포함하여 중·고교 과정을 연속으로 2년 이상 재학해야 함</p> <p>○ <b>부모(보호자)의 외국 영주·체류·거주·근무 기간은 지원자의 재학기간과 중첩된 기간만을 인정함</b></p>
	현지 법인 근무자의 자녀	외국에서 2년 이상 현지법인에서 근무하거나 근무 하고 귀국한 자의 자녀(부모가 모두 해당국에 체류 하여야 함) ※ 근무형식: 상근한 경우에 한함	
	현지 자영업자의 자녀	외국에서 2년 이상 자영업을 하고 있거나 자영업 후 귀국한 자의 자녀(부모가 모두 해당국에 체류하 여야 함)	
	외국 유학생의 자녀	외국에서 2년 이상 유학을 목적으로 거주중이거나 유학 후 귀국한 자의 자녀(부모가 모두 해당국에 체류하여야 함)	
	외국 근무 공무원의 자녀	외국에서 2년 이상 근무하거나 근무하고 귀국 한 공무원의 자녀 ※ 근무형식: 상근한 경우에 한함(교육, 연수, 출장 등의 목적으로 거주하는 경우 제외)	
	정부초청 유치과학 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해 귀국한 과학기 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 근무형식: 상근한 경우에 한함	
	외국 근무 상사 직원의 자녀	외국에서 2년 이상 근무하거나 근무하고 귀국한 상사직원의 자녀 ※ 근무형식: 상근한 경우에 한함(교육, 연수, 출장 등의 목적으로 거주하는 경우 제외)	
외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 근무자의 자녀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서 2년 이상 근무하 거나 근무하고 귀국한 자의 자녀 ※ 근무형식: 상근한 경우에 한함(교육, 연수, 출장 등의 목적으로 거주하는 경우 제외)		
외 국 인	외국 국적 취득 외국 인 학생(학생 본인만 외국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었던 외국인으로서 외국 국적 취득 후 외국에서 2년 이상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복수국적자 제외, 지원자의 부모 국적 불문)	

2) 제2유형: 입학정원 제한 없는 정원 외 모집

공통 학력 요건
<p>외국에서 초·중등 12년 이상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북한이탈주민 제외)하고,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학력을 소지한 자</p> <p>※ 1개 국가에서 초·중등 전 과정을 이수한 경우에 한해 외국의 12년 미만 학제도 인정함(단, 해당국 및 외국에서 초·중등 교육과정을 혼합 이수한 경우는 제외)</p> <p>※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12년)을 연속하여 전부 이수하여야 하며, 12년 교육과정 중 국내 학교에 조금이라도 재학한 사실이 있으면 지원자격을 인정하지 않음(북한이탈주민 제외)</p>

지원 자격 구분	자격 요건
전 교육과정 이수 재외국민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전 교육과정 이수 외국인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외국인
전 교육과정 이수 결혼이주민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하고 「국적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귀화 허가를 받은 결혼이주민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북한이탈주민으로 등록된 자로서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거 동등 이상 학력을 취득한 자

※ 부·모·지원자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는 '순수외국인 특별전형'으로 모집함  
(담당부서: 국제협력과 062-530-1276)

**나. 전형요소 및 방법**

- 1) 전형요소: 면접고사 100%
- 2)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지원자 1인당 3명의 면접위원이 지원자가 제출한 자기소개서 등 참고서류를 기초로 진로의식, 전공기초 소양 및 전공적합도, 학문적 열정, 이타심 등을 약 15분간 종합적으로 평가

### 3. 제1유형(입학정원 2%이내 ) 해외 재학·거주·체류 기간 산정 기준

지원 자격 구분	학생			보호자			배우자	
	재학	거주	체류	근무	거주	체류	거주	체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외국 영주 재외국민(교포)의 자녀</li> <li>•현지 법인근무자의 자녀</li> <li>•현지 자영업자의 자녀</li> <li>•외국 유학생의 자녀</li> </ul>	2	2	2	2	2	1.5	2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외국 근무 공무원의 자녀</li> <li>•정부초청 유치과학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li> <li>•외국 근무 상사 직원의 자녀</li> <li>•외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 근무자의 자녀</li> </ul>	2	2	2	2	2	1.5	-	-
•외국국적 취득 외국인 학생	2	2	2	-	-	-	-	-

※ 재학, 거주, 체류기간에서 1.5는 1년 6개월을 의미함

※ 보호자의 체류기간은 출입국 증명서 상 해당국의 거주기간에서 국내 체류 일수를 제외한 기간으로 출장 등 업무상 일시 귀국한 경우도 국내 체류 일수에 포함

### 4. 입학전형 예고사항

2021학년도 재외국민과 외국인 공통 지원자격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2호의 재외국민 및 외국인(정원의 2% 선발) 전형의 지원자격을 표준화함</li> <li>• 학생 이수 기간은 3년 이상으로, 체류기간은 학생의 경우 이수기간의 3/4 이상, 부모의 경우 2/3 이상으로 설정</li> <li>• 다만, 지원자격 변경에 따른 학생·부모의 신뢰보호 및 선의의 피해를 막기 위하여 2020학년도까지는 대학 자율로 시행하되, 공통 지원자격은 2021학년도부터 적용</li> </ul>

구분	2020학년도 까지	2021학년도 이후
학생 이수 기간	2년 또는 3년 이상 등 대학 자율 시행	고교 1년 포함 중·고 3년 이상으로 표준화
체류 기간	대학 자율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 학생 이수기간의 3/4 이상</li> <li>- 부모: 학생 이수기간의 2/3 이상</li> </ul>